

보 도 자 료

수 신	귀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부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8개 인권단체 연대체) hrcomm2017@gmail.com
제 목	[성명서] 인권에 나중은 없다. 경남도의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총 2p)
일 시	2019. 05. 17. 금.
담 당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301-6946)

[성명서]

인권에 나중은 없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UN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믿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문게 하는 상황의 반복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온 학생의 권리를 다시 한번 유예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규탄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학생의 권리를 짓밟는 세력에 강하게 분노한다.

체벌, 모욕, 성희롱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교육의 과정’이라는 핑계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6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의하며 “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 28조는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본 협약과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나아가 UN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3호를 통해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며,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교육의 과정이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과정이기에 더욱 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고 실현해야 한다.

학생에게도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인권은 졸업하고 찾으라는 식의 행태를 멈춰라.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며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통해 흔들림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9. 05. 17. 금.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8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 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